

1998. 4. 20 제정

2023. 11. 30 개정

경영위원회 규정

삼성전자주식회사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영위원회(이하 경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경영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기능)

경영위는 정관, 이사회 규정이 정한 것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경영위의 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5조 (위원장)

경영위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경영위의 의장이 된다.

제3장 회의

제6조 (개최)

경영위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경영위의 소집)

- ① 경영위는 의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24시간 전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경영위 위원 및 기타 참석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경영위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경영위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경영위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 임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부의사항)

- ① 경영위에 부의할 사항은 이사회가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일상 경영사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위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
- 2) 주요 경영전략
- 3) 사업계획·사업구조 조정 추진 (한계·적자사업 정비 등)
- 4) 해외 지점·법인 설치, 이전 및 철수
- 5)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 추진
- 6) 국내외 주요 자회사 매입 또는 매각
(자기자본 0.1% 이상인 경우에 한함)
- 7) 기타 주요 경영현안
- 8) 지점,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 폐지
- 9)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10) 최근사업년도 생산액의 5%이상 생산중단, 폐업
- 11) 자기자본 0.5%이상 기술도입계약 체결 및 기술이전, 제휴
- 12) 자기자본 0.5%이상 신물질, 신기술관련 특허권 취득, 양수, 양도계약
- 13)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의 5%이상 상당 제품수거, 파기
- 14)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의 5%이상 상당 단일계약 체결
- 15)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의 5%이상 상당 단일판매 대행 또는 공급계약 체결 또는 해지
- 16) 조직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 17)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의 기본원칙의 결정 및 변경
- 18)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
- 19)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 20)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의 제정
- 21) 삭제

2. 재무 등에 관한 사항

- 1) 자기자본 0.1% 이상 2.5% 미만 상당 타법인 출자, 처분
- 2) 자기자본 0.1% 이상 2.5% 미만 상당 해외 직접투자
- 3) 자기자본 0.1% 이상 2.5% 미만 상당 신규 담보제공 또는 신규 채무보증
(기간 연장은 제외함)

- 담보 :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채무보증 : 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함.
- 4) 자기자본 0.1% 이상 5% 미만 상당 신규 차입계약 체결 (기간연장은 제외함)
- 5) 내부거래의 승인
내부거래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30억원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 금액 미만 상당의 자금(가지급금, 대여금 등), 유가증권(주식, 회사채 등) 또는 자산(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기존 계약을 중대한 변경 없이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함)
- 6) 사채발행
- 7) 자기자본 0.1% 이상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단, 제3자와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함.
- 8) 주요 시설투자 등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제11조 (통지의무)

- ① 경영위는 결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삭제

제12조 (사후승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경영위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경영위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의사록)

- ① 경영위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경영위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 ① 경영위는 간사를 두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위원을 보좌하고 경영위의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제15조 (경영위 지원)

회사는 경영위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영위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담당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